

『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11월 20일

나. 발 의 자 : 박세진, 강승수, 권기만, 김근아, 김복자
김태근, 손홍섭, 안주찬, 양진오, 정하영
허 복(11인)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2월 18일

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박세진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헌법」 제10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규정하고 있으며
- 범 국민적인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요구되면서 구미시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함.

다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4조)
-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6조)
-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(안 제8조)
-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(안 제10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헌법」 제10조 및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5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- 「헌법」 제10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규정하고 있으며
-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요구되면서 구미시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함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2조), 시장의 책무(안 제4조),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6조),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(안 제8조),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(안 제10조) 등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.

○ 검토결과

▪ 본 조례안은

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미시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도모함은 물론 장애인,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개별 인권조례 제정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.

-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례 제정 권고사항이며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